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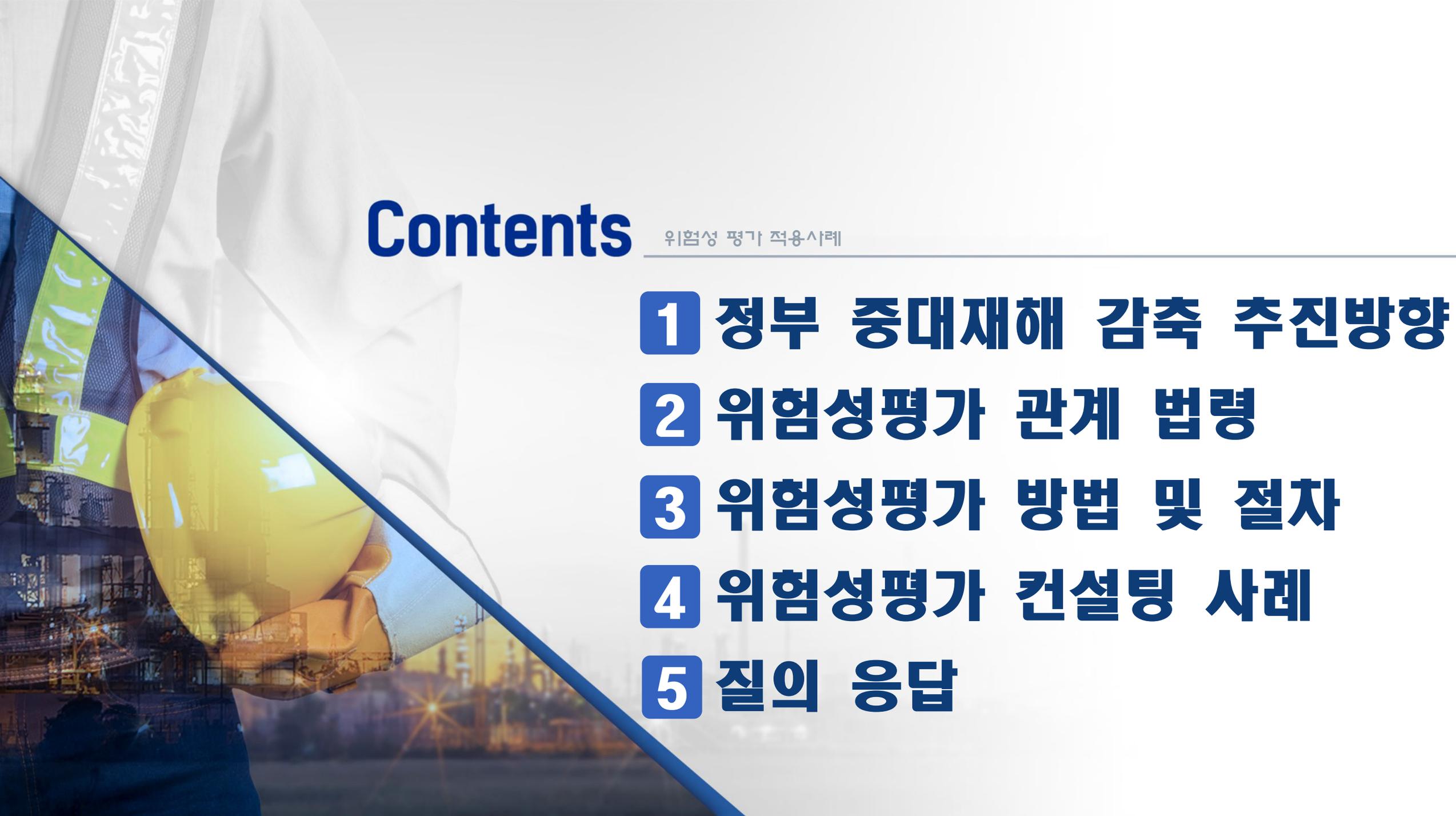
「2024 승강기 안전주간」 컨퍼런스

2024. 11.13.

소규모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위험성평가가 적용사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Contents

위험성 평가 적용사례

- 1 정부 중대재해 감축 추진방향**
- 2 위험성평가 관계 법령**
- 3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 4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례**
- 5 질의 응답**



1 정부 중대재해 감축 추진방향

정부 중대재해 감축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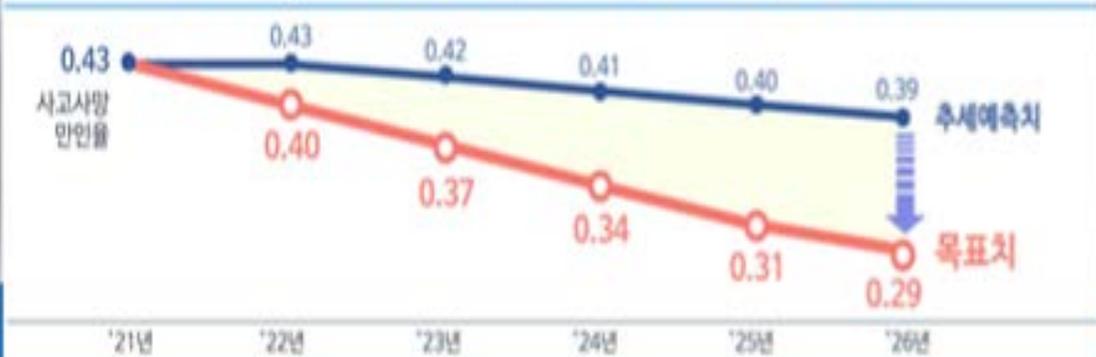
- 고용노동부('22.11.30. 발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채 -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29%로 감축 →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원칙

책임성

현장성

혁신성

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개편
- 자기규율예방체계 뒷받침 위한 감독행정, 법령·기준 정비

+

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50인미만 80.9%	건설·제조 72.6%	추락·끼임·부딪힘 62.6%	하청 40%	새로운 위험
중소기업 집중지원	스마트기술·장비 중점 지원	8대 요인 현장중심 특별관리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산업구조 및 기후변화 대비

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

-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참여 강화
-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중앙-지역-업종)
- 현장 중심 안전보건교육 강화

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 전문기관간 연계 협업
- 응급의료 비상상황 대응체계
- 중앙-지역 협업·거버넌스

정부 중대재해 감축 추진방향

- 고용노동부('22.11.30. 발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췌 -

IV. 정책 과제: 4대 전략, 14개 핵심 과제

전략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 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으로 정착
- ② 산업안전 정기감독은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및 기획감독을 통해 엄중 제재
- ③ '위험성평가' 현장 정착 지원을 위해 법령·기준 체계 정비 추진

1.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  현재 모습
-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
 - '13년부터 강행성 없이 도입 → 법령 및 감독체계는 그대로 유지하여 미작동
 - 대기업은 일률적,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불만 → 형식적 운용

1.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  현재 모습
-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
 - '13년부터 강행성 없이 도입 → 법령 및 감독체계는 그대로 유지하여 미작동
 - 대기업은 일률적,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불만 → 형식적 운용

1)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 대기업(300인 이상)부터 위험성평가 의무화('23.~),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연차적 적용 확대('24.~)

⇒ 적용 시기: ('23년 내) 300인 이상 → ('24.) 50~299인 → ('25.~) 5~49인

- 미실시,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벌칙 신설 ('23.~, 산안법 개정)
- 지도·점검 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개선대책(재발방지)의 적정성, 노·사 참여 여부, 현장 적용성 등 위주로 확인

- 위험성평가 실시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 →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



2

위험성평가가 관계 법령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 한국제강 대표이사 구속

이하린 기자 may@mk.co.kr

입력 : 2023-04-26 10:04:43 수정 : 2023-04-26 11:31:54

가 ㄱ ㄴ ㄷ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초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또 한 번 최고경영자(CEO)가 중대재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2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한국제강과 A씨 등은 설비 보수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떨어진 방열판(1.2t)에 깔려 숨지는 사고로 조사받다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됨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 또는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상기 점검을 한 것으로 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란?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대책의 수립·이행까지 이르는 일련의 절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은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①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②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 정비·보수 ③ 작업방법·절차 변경

➡ ① ~ ③ 등이 실행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성을 제거한 후 작업(정기적으로 확인 필요)

! 유해·위험요인 확인 시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위험요인 발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소속근로자, 상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 일시 출입자 등 포함



위험성평가 관계 법령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 **Why?** 준법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개선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3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평가 실시 목적



노출된 위험과 잠재되어 있는
위험을 모두 찾아내어 개선
대책을 세워 실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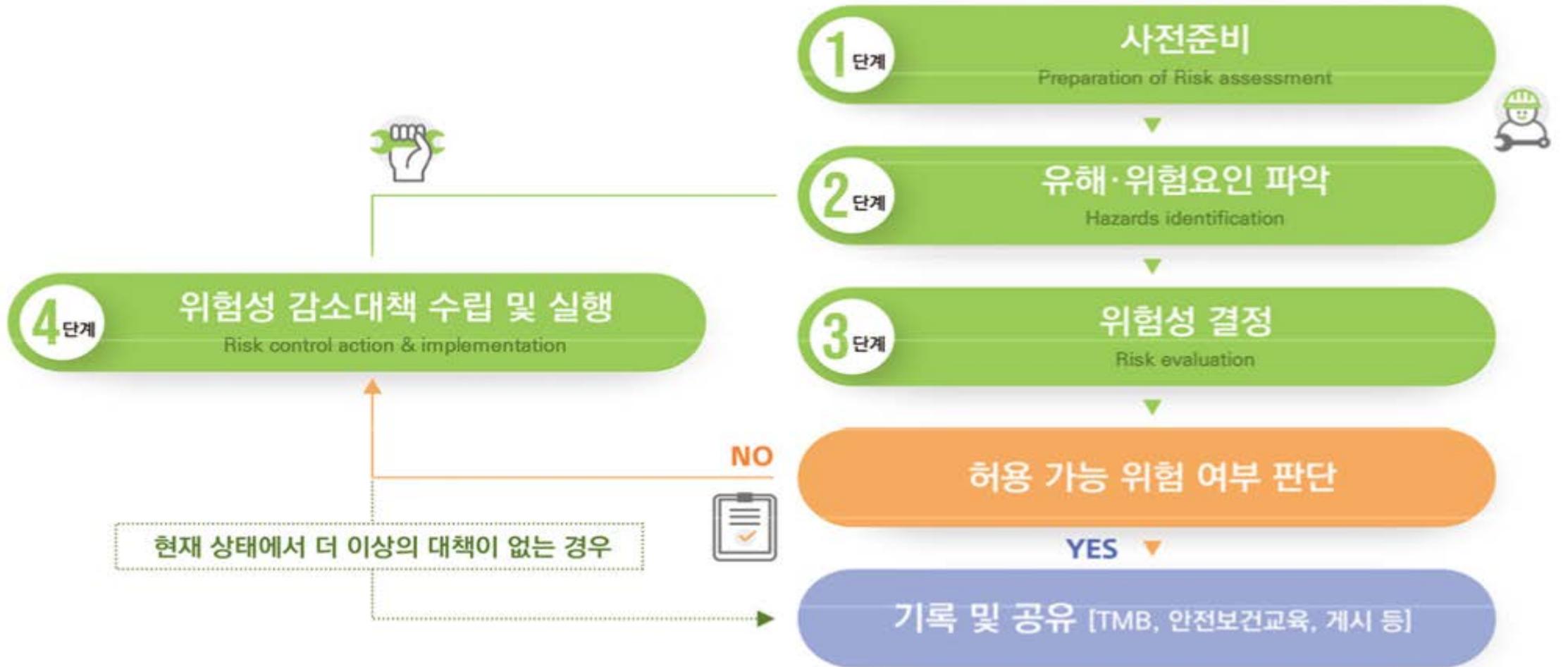
위험을 보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시작입니다.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 ☑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취지,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 ☑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
-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의 대상은?

-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다만, 경미한 부상·질병을 초래할 것이라고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제외)
-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경험 하거나 확인한 경우 → **아차사고**
- ☑ 중대재해가 발생,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 · 위험요인**



위험성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는가?

- ☑ (최초평가)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 (수시평가)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이미 실시한 경우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 발생



위험성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는가?

☑ (정기평가) 매 1년, 최초+수시 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닌 유해·위험 요인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재검토 시, 고려사항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위험성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는가?

☑ (상시평가) 수시 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와 순회점검, 유해·위험요인 발굴,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1.의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3. 매 작업일마다 1.과 2.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및 주의 사항을 TBM 등을 통해 공유·주지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1단계: 사전준비

-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 평가의 목적 및 방법,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 역할, 평가시기 및 절차, 근로자에 대한 공유·주지방법 등 유의사항, 결과의 기록보존
- ☑ **위험성평가 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목적, 실시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1단계: 사전준비

- ☑ **위험성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설정**
-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설정(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
- ☑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수집**
 - 작업표준, 작업절차서, 설비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재해사례 등
- ☑ **위험성평가 대상선정**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2단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필수)**
- ☑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 ☑ 설문조사, 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3단계: 위험성결정

-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결정**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일치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3단계: 위험성결정(예시, 3단계 판단법)

[표4]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 및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위험성 수준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상	개선조치 없이는 업무 불가능	허용 불가능
중	작업은 계속하되 개선조치 필요	허용 불가능
하	추가 개선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허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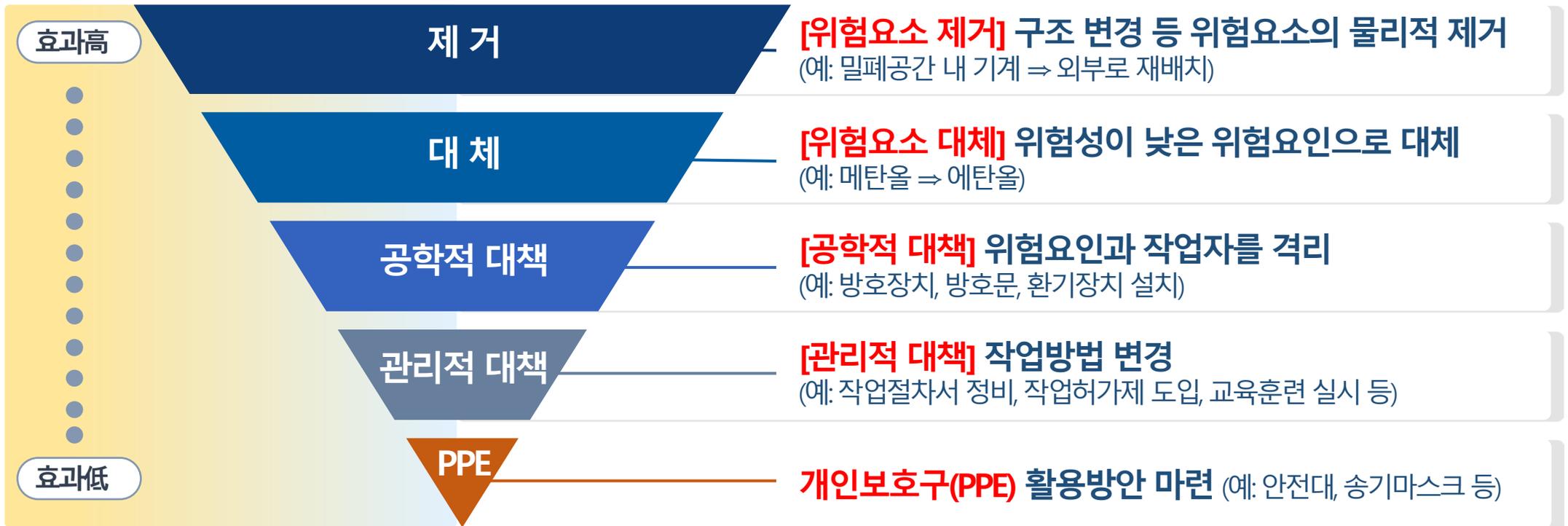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 **감소대책 실행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 확인 및 조치**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5단계: 기록·보존 및 공유(교육)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사업장에 보관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5단계: 기록·보존 및 공유(교육)

- ☑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공유**하여 위험성 감소 대책과 남아 있는 현장의 위험성에 대하여 공유
-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안전한 작업절차를 **지속적으로 공유**, 추가 위험요인이 있는 지 작업전 확인

위험성평가 사례(실시규정)

구분	담당	이 사	대표
내			
외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2024.09.01.

주식회사 00엘리베이터

안전보건 방침 및 추진 목표

00엘리베이터 임직원은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음의 안전보건방침을 적극 이행한다.

안전보건 방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한다.
- 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고 위험성 평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우리 회사 안전보건관리는 위험성 평가로 완성한다.

추진 목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화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 매년 위험성 평가 실시
 -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위험요인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에 대해 안전 보건(위험성 평가) 교육 실시

회사명: 주식회사 00엘리베이터

사업주 : 0.0.0 (서명)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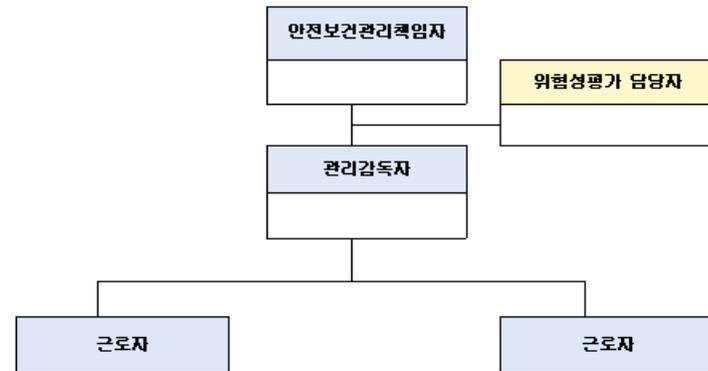
문서번호: 000.2024-01
제정일자: 2024.09.01.
개정일자: 0000.00.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회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과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은 [표1]과 같이 한다.

[표1]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 구성도



위험성평가 사례(실시 계획서)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담당	이사	대표
작성 일자	2024. 09. 01.	작성 자	000		
평가 도구	1. 3단계 판단법(승강기 유지관리) 2. 체크리스트법(사무실 행정업무)	평가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초 <input type="checkbox"/> 정기 <input type="checkbox"/> 수시		
평가 대상팀	1. 승강기 유지관리팀 2. 사무실 행정업무팀	평가기간	2024.10.1. ~ 10.31.		
실시 목적	유해·위험요인의 근본적인 원인도출 및 지속적인 개선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실시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실시안내 방법	사내 게시판 및 전체직원교육 전달				
실시 상 유의사항	직원 및 관리자 등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공유하도록 한다.				
사전준비 및 요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규정(위험성 수준 판단 및 결정에 대한 기준 등) - 작업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화학물질(MSDS 포함) 정보 - 작업요령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매뉴얼 - 사내 재해발생(아차사고 포함) 사례 - 해당 작업관련 재해사례(안전보건공단 자료 등) - 기타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 등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일정	참석 대상자	
	2024.10.17.	1. 승강기유지관리(00명) 2. 사무실행정(2명)	
	교육강사	신동호(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소요예산	-	
평가대상 공정(전체)	승강기 유지관리(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사무실 행정업무		
위험성평가팀	평가공정	평가자	팀원
	엘리베이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에스컬레이터		000, 000, 000, 000, 000, 000,
	휠체어리프트		000, 000, 000, 000,
사무실 행정업무	000	000	
실시일정	구분	일정	비고
	평가준비	2024.10.01. ~ 10.18.	
	평가실시	2024.10.19. ~ 10.31.	
평가결과 공유방법	사내 게시판 및 전체 직원 교육, 현장 직원대상 TBM 실시		

위험성평가 사례(보고서)

■ 평가공정: 승강기유지관리(엘리베이터)

■ 평가자: 000

1. 유해·위험요인 파악, 2. 위험성 결정, 3.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세부 공정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예정일	담당자
			상	중	하	관리번호	대책		
승강장 및 카내부	승강장 도어점검	도어를 유지보수 하던 중 연동로프 파단으로 로프에 손을 찔릴 수 있다			✓				
	승강장에서 카내부 진입	승강장 및 카내부 조도 미확보로 충돌 또는 넘어짐 위험			✓				
기계실	기계실출입	.이동 중 계단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기계실 천장이 낮거나 돌출부위에 머리를 부딪칠 수 있다			✓				
	조속기점검	. 점검 중 조속기 로프에 손이 끼일 수 있다			✓				
카상부 및 승강로	로프 및 승강장 문 점검	로프 및 승강문점검 으로 출입 시 미끄러져 다칠수 있다		✓		엘리베이터-1	2인1조 작업, 출입시 구조물 확인 및 카상부 오일제거, 논슬립 테이프 설치	'24.10.30.	000
	승강장문 점검	승강장문 점검시 날카로운 부위에 손을 베일 수 있다			✓				
피트	피트 출입시	최하층 승강입구 가까이 손이닿는 위치에 E-STOP스위치가 없을 경우 피트 진입시 카가 움직일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수있다		✓		엘리베이터-2	2인1조 작업, 피트내부 상하부에 승강장에서 손이 닿는 위치에 E-STOP스위치 설치	'24.10.30.	000
	배수설비 및 완충기 점검	피트 조도 미확보로 충돌 또는 넘어짐 위험			✓				

위험성평가 사례(보고서)

■ 평가공정: 승강기유지관리(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 평가자: 000

4.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관리 번호	감소대책 실행 전			감소대책 실행 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개선내용	위험성 수준			개선 완료일	담당자
		상	중	하		상	중	하		
엘리베이터 -1	로프 및 승장문점검으로 출입시 미끄러져 다칠수 있다		✓		● 개선내용 1. 카상부 진출입 절차서 유지관리 담당 전체 직원에게 배포(24.10.29) 2. 작업시 카상부 진출입 절차 숙지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전체 직원 대상으로 교육실시(24.10.29)			✓	24.10.29	000
엘리베이터 -2	최하층 승장입구 가까이 손이닿는 위치에 E-STOP스위치가 없을 경우 피트 진입시 카가 움직일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수있다		✓		● 개선내용 1. 피트 진출입 절차서 유지관리 담당 전체 직원에게 배포(24.10.29) 2. 2인1조 작업 및 피트내부 상하부에 승강장에서 손이 닿는 위치에 E-STOP스위치를 설치하도록 전체 직원 대상으로 교육실시(24.10.29)			✓	24.10.29	000

(참고)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제도

위험성평가 인정은 뭔가요?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인정유효기간: 3년

-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교육 이수부터 위험성평가 인정까지 각 단계별로 실시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면 바로 인정심사 신청 가능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함. 다만, 위험성평가 인정 여부는 사업주의 선택사항임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위험성평가 인정 시 혜택은 뭐가있나요?

안전보건공단

- **산재보험요율 20% 인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만 해당)
※ 산재보험요율 인하 적용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인정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일할계산하여 적용)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등

기술보증기금

-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및 보증요율 0.2%p 감면

무역보험공사

- 단기수출보험·수출신용 한도 1.5배 우대 및 보증(험) 20% 할인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60억→100억)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각 광역본부에서 심사

☑ 인정심사 항목

- A. 사업주의 관심도(100)
-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100)
-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100)
- D. 재해발생 수준(100)

★ 합격기준 ★

A, B, C, D 분야별 각 점수가
50점 이상(50점 미만 과락),
**전체 종합점수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4

위험성평가가 컨설팅 사례

위험성평가 컨설팅 목적

위험성평가 실행역량 확보 → 기업 스스로 위험성평가 실시 →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 ☑ 1. 위험성평가 교육
 - 위험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 ☑ 2. 위험성평가 규정 검토 및 작성
 - 규정(안)을 참고하여 회사 실정에 맞는 규정을 작성한다.
- ☑ 3. 현장사례 실습
 - 실제 현장사례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역량을 향상 시킨다.
- ☑ 4. 현장 적용능력 향상
 - 회사 업무를 대상으로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 전문가의 코칭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절차

신청기업 00개사를 1개 팀으로 하여 통합 컨설팅 진행

규정·서식
제공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보고서 등 관련 서식

교육·실습
(집체)

평가 담당자 중심,
집중교육 (1일)

자체평가

신청기업 스스로
평가 실시(2주)

자체평가
서류검토

전문가가 자체평가의
적정성 검토

현장방문
코칭(1:1)

자체평가 검토결과 반영,
전문가 현장 코칭(1일)

'인정'
획득 지원
(1:1)

안전보건공단과
유기적 소통



위험성평가 컨설팅 세부절차

1. 교육·실습(공단)

위험성평가 담당자(1명)는 필히 참석
* 평가 담당자 외 대표(또는 이사) 1명은 오전 참석 요망

- ☑ 중처법 주요내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오전, 1H)
- ☑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실무 교육(오전, 2H)
- ☑ 위험성평가 규정 및 서식 등 안내 및 검토(오후, 2H)
- ☑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사례 중심의 실습(오후, 3H)

2.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신청업체)

각 사업장별 평가 담당자가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 제공된 서식 및 교육·실습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담당자가 스스로 위험성평가 실시
 - ☑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사업장은 평가보고서 사본을 이메일로 공단에 제출
- * 공단에서 위험성평가 실시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현장코칭에 활용



위험성평가 컨설팅 세부절차

3. 자체 위험성평가 서류검토(공단)

평가보고서를 발송한 사업장부터 순서대로 검토 예정

-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평가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검토
- ☑ 개선사항 발굴 등 서류검토가 완료되는 데로 사업장 담당자에게 개선사항을 안내

4. 현장 방문 1:1 코칭(공단)

평가 담당자는 자체 실시한 **위험성평가 보고서 준비**

- ☑ 공단 위험성평가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전체직원 대상 교육 실시
- ☑ 위험성평가 담당자 대상 1:1 코칭(개선사항 안내, 질의 응답)
- ☑ 현장 방문 후, 추가 개선사항 발굴 시 이메일 및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안내
- ☑ 위험성평가 인정 획득을 위한 방법 및 절차 안내

* 인정 획득 신청 시, 공단에서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지원

'24년,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진현황

★ 대전 및 충청 지역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26개사 컨설팅 진행 중 → 5개사, 우수사업장 "인정" 획득(24.10.10) ★



관리(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평가자:

구분	위험성 결정			개선내용	위험성 수준			개선 완료일	담당자
	고	중	저		고	중	저		
계		✓		◎ 개선내용 1. 출입금지 표지를 신규로 제작하여 유지관리 담당 전체 직원에게 배포(24.5.19.)			✓	24.5.21	이훈규

작성서류 검토 및 개선사항 안내

2024-08-10 17:10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함 (예시)

- 교육: 교육결과보고서, 서명록(해당작업 전직립), 교육사진 등
- 보조구 등 구매하여 배포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구 지급대장 마련
- 또한 작업결과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내 문서로 작업결과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 대표님 현장 모니터링 등을 감소대책으로 수립한 경우,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간략하게 문서화(대표) 게재하여 보관 필요





5

질의 응답



문의사항 연락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산업기계사업실

신동호 차장

사무실: 055-751-0821

핸드폰: 010-2808-9898

이메일: dhshin@koelsa.or.kr



감사합니다